

제정 1998.6.11.
개정 2005.6.10.
개정 2007.5.11.

[제1조 목적]

- 이 세칙은 무약 제4학사 국가고시동 기숙사생(이하 '국가고시동 기숙사' 라 한다)을 선발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한 기숙사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[제2조 활용의 원칙]

- 이 세칙은 매년 사생의 입사 및 퇴사를 경합 때 지침으로 활용하며, 신청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[제3조 규칙의 개폐]

- 이 세칙은 국가고시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개폐할 수 있다.

[제4조 국가고시의 범위]

- 이 세칙에서 정하는 국가고시는 국가고시관리위원회 내규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[제5조 입사대상]

- 국가고시동 입사대상자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부 및 대학원(특수대학원 포함) 재학생으로 한다.
- 대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.

[제6조 선발순위]

- 사생의 선발은 다음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. 단, 동순위 자격으로 경합할 경우에는 지방학생을 우선 선발한다

▶ 1차 유예제도가 있는 국가고시의 경우 당해 연도 및 익년에 국가고시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학생을 최우선으로 선발한다. 단, 최대입사정원은 해당 고시 정원의 최대 40%까지로 한다.

▶ 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각 국가고시별로 요구하는 민간영어자격시험 기준점수를 통과한 자 중에서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순으로 선발하도록 한다. 단, 모의고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고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학교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한다.

- 위 1항에 의해서 선발한 입사자는 국가고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.

- 제1항에 따라 선발한 최종선발인원은 다음 각 호의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국가고시정보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
▶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자는 3학년, 4학년 각각 입사 가능정원의 10%, 90%를 초과할 수 없다.

▶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는 2학년, 3학년, 4학년 각각 입사 가능정원의 20%, 30%, 50%를 초과할 수 없다.

▶ 1호와 2호의 경우 대상학년의 판단은 입사시의 학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휴학생의 경우에는 복학시의 학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
[제7조 선발시기 및 신청절차]

- 국가고시동 기숙사의 사생선발은 매년 1학기 선발과 2학기 선발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며, 세부적 일정은 국가고시지원센터에서 정하도록 한다. 단, 1차 유예제도가 있는 시험의 경우 제6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자는 2학기 선발 1차례만 실시하도록 한다.

- 국가고시동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국가고시지원센터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소정의 지원서와 서류를 동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생활관 국가고시동에 지원하는 자는 교내 타 기숙사에 이중 지원할 수 없다.

[제8조 제출서류]

- 입사지원서

- 주민등록증/호적등본(택1)

- 성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취득한 민간영어시험성적표

- 기타 국가고시지원센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

[제8조의 2 (입사)]

- 임사업무가 종료한 경우 국가고시지원센터는 입사자 명단을 생활관에 통보하고 제8조의 서류 중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.

- 임사가 확정된 자는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입사결정을 밟아야 한다.

-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임사결정을 취소하도록 한다.

[제9조 입사시기 및 입사기간]

- 1학기 선발인원의 입사 시기는 매년 3월 1일로 하며, 2학기 선발인원의 입사 시기는 매년 8월 31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고시지원센터는 생활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입사시기를 경합 수 있다.

- 국가고시 1차 유예제도가 있는 시험의 경우,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국가고시의 2차 시험 종료 직후 국가고시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입사하도록 한다.

- 모든 학생은 4학기 이상 연속하여 국가고시동 기숙사에 체류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국가고시지원센터 소장의 특별허락을 얻어 1학기 연장할 수 있다.

- 국가고시 1차 유예제도가 있는 시험의 경우,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2학기 동안 연속하여 국가고시동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4학기를 초과하더라도 2학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2차 시험 종료 직후 제13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사하여야 한다

[제10조 시험별 배정인원]

- 국가고시동 기숙사의 시험별 배정인원은 별표1과 같다. 단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가고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- 사생의 배정정은 국가고시지원센터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관에서 하며,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을 변경할 때도 생활관의 방 변경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.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고시기숙사 관리내규에서 정하도록 한다.

[제11조 대기자 선발]

- 국가고시지원센터에서는 사생을 선발할 때 일정수의 대기자를 선발하여 결원 시에 이를 보충한다.

[제12조 입사생 추천 및 등보]

- 삭제

[제13조 자진퇴사]

- 자진 퇴사자는 1주일 전에 생활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 1학기 동안 입사가 제한된다.

- 모든 학생은 자진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기숙사에 재입사 할 수 없다. 단,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임시퇴사 할 경우, 생활관의 사전허락을 얻어야 한다. 그러나 그 기간은 계속하여 2개월을 넘지 못하며 기숙사 관리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

- 납부금의 반환은 분기별 공식 입사일 1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하며, 공식 입사일 이후부터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 공제한 후 잔여 일수 환불금액 없음

- 강제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부터 10주차까지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 환불금액의 90%를 환불한다. 단, 10주차 이후 강제 퇴사 시 환불금액이 없으며, 향후 재입사가 불가함

[제13조의 2 강제퇴사]
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생은 생활관의 권한으로 국가고시동 기숙사에서 퇴사시킬 수 있다.

▶ 거주기간 동안 사감이 부과하는 경고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된 경우

▶ 사내 도박이나 음주행위 등이 적발된 경우

▶ 기타 국가고시기숙사 관리내규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
▶ 생활관 별점 부과 기준에 따라 누적 별점 6점이 초과된 자

- 강제 퇴사된 경우 국가고시지원센터는 퇴사사유를 해당 고시지도교수에게 보고하며, 향후 입사를 불허한다.

별점

상점

[별점기준표]

번호	내용	별점
1	기숙사내에서 폭행, 절도 등 형사상 범법행위	퇴사
2	대리입사자 및 제공자, 무단 입사(숙박)자 및 제공자	퇴사
3	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/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	퇴사
4	기숙사내에 인화물질, 위험물을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	퇴사
5	기숙사내에서 음주(술병 반입포함), 흡연(호실내 꽁초 발견포함) 도박행위	퇴사
6	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을 기숙사 방으로 대동하는 행위	퇴사
7	학생증 또는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	5점
8	전열 기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	5점
9	기숙사내에서 흡연하는 행위(호실내 꽁초 발견시 동일 적용)	5점
10	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	5점
11	각 사생동의 경문이 아닌 비상문 및 창문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	5점
12	기숙사내에 공공이용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방안의 시설이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	4점
13	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는 행위	3점
14	기숙사 내 . 외에서 소란 또는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	3~5점
15	점검 시 비협조적인 태도	2점
16	출입시간을 위반한 행위	2점
17	장기 무단 외박자	2점
18	낙서, 허가받지 않은 부착물의 첨부,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	2점
19	기숙사 방안에서 식사하는 행위	2점
20	기숙사내에서 애완동물을 반입 및 사육하는 행위	2점
21	기숙사의 퇴사 일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	2점
22	그밖에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	1점~퇴사

별점

상점

[상점기준표]

번호	내용	상점
1	화장실 청소(1일 2시간)	0.5점
2	컴퓨터실, 휴게실, 독서실 등 공동구간 청소(1일 2시간)	0.5점
3	응급 구조 및 간병 등의 봉사를 한 이(월 2회)	1점
4	생활관 사무실 근로활동을 한 이(1일 3시간 주 3회)	1점
5	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행위(각종 선행활동, 봉사활동)	0.5~2점

별점

상점

[별점기준표]

번호	내용	별점
1	화장실 청소(1일 2시간)	0.5점
2	컴퓨터실, 휴게실, 독서실 등 공동구간 청소(1일 2시간)	0.5점
3	응급 구조 및 간병 등의 봉사를 한 이(월 2회)	1점
4	생활관 사무실 근로활동을 한 이(1일 3시간 주 3회)	1점
5	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행위(각종 선행활동, 봉사활동)	0.5~2점